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01491	2020.11.11	2026-01-20

정보공개서



서울미나리

가맹본부 비비다이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비비다이닝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 본부 정보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08호 (낙양동, 골든타워)		
	전화번호	1555-0716	팩스번호	-
	대표 휴대전화 (연락처)	(비공개)	이메일	bbdining@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승 서울미나리

인수
고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비비다이닝	서울미나리 외3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08호 (낙양동, 골든타워)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8.07.16	김상열	1555-0716	-
	법인등록번호	해당사항없음	사업자등록번호	814-08-0105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해당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서울미나리] 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서울미나리	
상 호	[서울미나리] 00점	
상표(서비스표)		<p>출원번호 420230210264(2023.11.20.)</p> <p>등록번호 4021756060000(2024.03.29.)</p> <p>출원번호 4020250127324 (2025.07.16)</p>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기의 표장(현)에 대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상표는 가맹본부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3년 동안 다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포함)에 인수·합병 된 적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근거자료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첨부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266,546	-	-
2023년	-	-	-	367,644	-	-
2024년	-	-	-	494,621	-	-

*비비다이닝 매출액은 밀포유 가맹사업 매출액과 서울미래 직영점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상열	대표	2018.07.16 ~ 2024.6.30	밀포유 대표	경영 및 운영
			2024.7.1.~현재	비비다이 닝 대표	
			2024.2.1.~현재	서울미나 리 직영점 대표	매장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연도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기준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상열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중	혼밥쌀롱 (등록번호: 2020149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가맹사업경영
			2024.8.13.~현재	서울미래리 (등록번호:20201491)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준비중	서화당 (등록번호:20201129)이라 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가맹사업경영
			2019.10.1. ~ 현재	밀포유 (등록번호: 20190860)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관리내용	출원번호 (출원신청일)	등록번호 (등록일)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사업에 필요한	4020230210264	4021756060000	김상열	2034.03.29

 서울미나리	상호, 영업표지, 인 테리어 등 (43류)	(2023.11.20)	(2024.03.29)		
 서울미나리	상호, 영업표지, 인 테리어 등 (35류)	4020250127324 (2025.07.16)	출원중	김상열	출원중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은 해당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4.8.13

직영점 시작일 : 2024.02.01. (영업시작일)

2. 당해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밀포유	[불량꽃게]	김상열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08호 (낙양동, 골든타워)
밀포유	[강정파이브]	김상열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08호 (낙양동, 골든타워)
비비다이닝	[서울미나리]	김상열	2024.8.13.~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08호 (낙양동, 골든타워)

3. 당해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서울미나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알콘이뚝배기, 미나리전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5	4	1
서울	-	-	-	-	-	-	1	1	-
부산	-	-	-	-	-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2	1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2024	0	4	0	0	0	4

6. [서울미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 당사는 [서울미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비비다이닝 / 김상열	밀포유	20190860	기타외식	11/1	1/0	1/0
		서화당	20201129	기타외식	0/0	0/0	0/0
		혼밥쌀롱	20201490	한식	0/0	0/0	0/0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4	해당없음	-	-	-	-	-	5개 미만
서울	1	해당없음						
부산	1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1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현재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없어 평균매출액 산정을 제외합니다.

8. [비비다이닝]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비다이닝]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4개	약 8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점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역사무소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는 2024년에 [서울미래] 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 1층	031-850-4311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일로 부터 3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서울미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 발생시	가맹점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오픈상담, 장소선정 지원, 계약금 등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	교육개시	know-how, 매뉴얼제 공 요리방법등 교육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3,000
가입비	5,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0,800				66㎡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미지정)	33,000	1,650	공사 시작 1주일 전	공사시작 전 계약해지 시	
간판	협력업체(미지정)	5,500		공사 시작 1주일 전	공사시작 전 계약해지 시	
설비	협력업체(미지정)	6,600	330	공사 시작 1주일 전	공사시작 전 계약해지 시	
집기	협력업체	700				필요시 직접 구매
초도물류	가맹본부	5,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 시	가맹본부가 정한 디자인 규격 사용 필수

POS	협력업체(미지정)	임대			기존매장 기기 사용
-----	-----------	----	--	--	------------

- 샵인샵 형태의 가맹사업으로 인테리어, 간판,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자 필요하에 수행은 자율입니다. 초도물류(닭강정소스, 포장지, 스티커 등), 본부가 정한 포장지는 필수 사용입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의 도면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소방관련 인허가비, 실외공사, 전면·입구창호공사, 철거, 공조냉난방공사, 풀딩도어, 전기승압공사, 의자 및 탁자, TV, 음향장치 등) 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의 입지 선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최종 결정은 가맹점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서울미나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가맹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미나리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이 정보공개서 [V.9]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Royalty	가맹본부	매출액(카드+현금)의 2.2%	매월 1일 (전월 매출액)	전월 매출액산정이 잘못된 경우	전월 매출액으로 반환되지 않음	
전국단위 상품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전체50%	광고계획통지 일로부터 14 일 이내	미반환	소멸성비용	광고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전국단위 판촉비 분담금		항목별 분담	추후협의	미반환	소멸성비용	판촉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 2일전 완납	교육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교육내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됨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설치즉시 100%	변경설치 전	변경설치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자율선택		교체·보수시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 자율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1.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자율선택	시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차액가맹금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반기별 1회	문의 : 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반기별 1회	문의 : 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원을 [서울미래]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500				
가입비	0	-	-	-	
교육비	5,500	양수계약시 지급	교육개시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보증금	2,000	양수계약시 지급	계약종료시 반환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부가세 미포함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 정보공개서 [V.6] 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잔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은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철거·제거 및 반환 등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제거 및 반환 등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제거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귀하가 [서울미래] 가맹점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서울미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서울미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서울미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의 지정된 상품류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1	알곤이뚝배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2	알곤이칼국수			
3	별미미래전			
4	알곤이해장전골(2인이상)			
5	미래리추가			
6	알추가			
7	곤이추가			
8	알곤이추가			
9	칼국수사리			
10	소주/맥주/막걸리			
11	콜라/사이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구두경고, 2회위반시 서면시정요구, 3회 위반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메뉴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소스 등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가 현재 취급하는 상품·용역 중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메뉴		가격
1	알곤이뚝배기	11,000
2	알곤이칼국수	10,000
3	별미미나리전	10,000
4	알곤이해장전골(2인이상)	16,000
5	미나리추가	8,000
6	알추가	9,000
7	곤이추가	8,000
8	알곤이추가	10,000
9	칼국수사리	3,000
10	소주/맥주/막걸리	5,000
11	콜라/사이다	2,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알곤이뚝배기, 미나리전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서울미나리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1,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은 별도 규정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서울미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4%	6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서울미래]** 가맹점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7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일반적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31조 1,2항
○ 가맹본부의 공급품이나 기타 설비의 영업표지를 훼손또는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로열티 및 공급품의 대금의 납입이 3회이상 연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메뉴 및 변경·수정·보완된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점매입을 하거나 사입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p>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및 점포를 다른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 할 대금지금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 된 경우 ○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가맹본부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계약서 31조 3,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수정사유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①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에 대한 고시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조건	양도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운영권의 대리나 위탁운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	이전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승인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소요) ->승인여부 통지 ->가맹본부의 상속에 의한 사업자변경계약 체결 ->가맹점 운영권 상속완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대리행사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서울미나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금지지역	경업허가절차	비고
알곤이뚝배기, 미나리전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식업종	전국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서울미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평일	11:00 ~ 22:00 (11시간)	주 6일	문의: 본부
주말	10:00 ~ 22:00 (12시간)		

*운영시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가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3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3명 (영업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반기	담당 슈퍼바이저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 또는 POS점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반기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서울미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부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포함)	전체광고 비용의 50%	전체광고 비용의 50%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광고부담금 납부(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 → 광고개시	대중매체 광고, 지역언론 매체 등
	가맹점모집광 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행사	할인서비스, 멤버십제휴 서비스, 경 품제공 등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현수막·전 단·카드로그 등 제 작과 관련한 로 그·디자인 작성비 용 등 기획비용	상품의 할인비용,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 및 현수막·전단·카 드로그 등 제작·배 포비용등	판촉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및 행사개시	기타비용 균등부담

○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부담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시행계획을 통지하는 날 직전 3월간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인 중도 해지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 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삼십천만원 (₩3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매출액 대비 평균적 필수(강제)품목 소요량을 산출하여 “을”의 자점매입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④ “을”이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갑”이 지불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과 “을”이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선택사항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15(1일)	IV.1 참고
간판 인테리어 공사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 실시	D-15~4(11일)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자율 실시 IV.1 참고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	D-3~2(2일)	IV.1 참고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일)	본부교육 1일 (1일 10시간) VIII.2 참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서울미나리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오픈 바이저 지원	매장 오픈에 필요한 업무 총괄지원	신규오픈 및 양도양수 가맹점	신규오픈, 양도양수 후 3회(1회 1일)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미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및 경영이론 조리 매뉴얼 및 현장 OJT, POS사용	이론교육 실습교육	영업개시 1일전 까지	필수교육
수시교육	신메뉴 출시 조리교육, 위생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필수교육

※ 가맹본부 무상 출장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서울미래]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 용	비고
신규 교육	1일 10시간	5,500	오픈시 현장교육 포함,
정기·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다름	매년 또는 관리자(sv)요구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점주포함 2인이며, 추가 인원의 교육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에 따라 협의 후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수료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음식의 조리 및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서울미래 본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수역이길 23(성사동)

*직영점은 2024년 2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개월	2024.2.1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14,700	직영점은 2024년 2월 1일 영업을 시작하여 11개월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재했습니다. 매출액은 서울미래 직영점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미나리

<별첨1>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수령인 :

(인) 또는 서명

<별첨2> 재무사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서울미나리

<별첨3> 가맹금예치 신청서



서울미나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비비다이닝(서울미래)		
	성명(대표자) 김상열		
	주소(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08호 (낙양동, 골든타워)	전화번호 : 1555-0716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 의 계좌	기업은행 112-205639-04-0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첨 4>

영업지역 표시도

아래의 지도 표기와 같이 영업지역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상기와 같이 설정합니다.

본인 성명 _____ (인)

<별첨5>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비비다이닝 대표 김상열 (인)

-----간인 후 절취-----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비비다이닝 대표 김상열 (인)